

|              |                       |
|--------------|-----------------------|
| 의안번호         | 제 233 호               |
| 의 결<br>연 월 일 | 2023년 3월 일<br>(제407회)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발 의 자 | 박재주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7일 |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주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3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7일

발 의 자 : 박재주 · 김현문 · 이정범  
박병천 · 박용규 · 유상용  
이윅희 의원

## 1. 제안 이유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학교스포츠클럽등에 대한 지원 사항 (안 제5조)

마.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및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공공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스포츠클럽(이하 “학교스포츠클럽등” 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1.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소속 학교 학생의 학사관리
2.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지원
3. 제7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스포츠클럽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학교스포츠클럽등에 관련한 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5. 제3호 및 제4호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행정, 지도자) 지원, 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6.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7조(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동부를 단체 및 법인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본조에서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은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있는 경기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자체적으로는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밖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본조에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공공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교육감은 공공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교육기본법

**제22조의3(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 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 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국민체육 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 1. 사업 개요

-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 예산

## 2. 비용 발생 요인

- 매년 공공스포츠클럽(지역거점형, 종목연계형)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

## 3. 관련 조문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7조(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의 운영비·자산취득비의 기준단가로 하며,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단체 산출기준은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형은 2개 클럽, 종목연계형은 6개 클럽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한 개 클럽당 연 60,000천원(인건비 30,000천원, 운영비 30,000천원)으로 추계함.

※ 향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수는 증감 될 수 있음

#### 나. 추계 결과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480,000천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400,000천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됨

## 〈 연도별 비용 추가 소요 예산 〉

(단위 : 천원)

| 사업명                  | 합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공공스포츠클럽<br>인건비 및 운영비 | 2,400,000 | 480,000 | 480,000 | 480,000 | 480,000 | 480,000 |

### 다. 추계비용의 상세 내역

○ 공공스포츠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안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1)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축구, 야구 등)

- 전환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클럽당): 연 60,000천원 × 3년=180,000천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30,000천원 ※ 30,000원 × 주 20시간(하루 4시간)</li> <li>· 운영비 30,000천원</li> </ul> |
|---|

- 학교시설 사용 권한: 3년 계약(계약 종료 후 우선 사용 권한 부여)

2)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수영, 볼링, 배드민턴, 탁구 등)

- 종목별 위탁사업비 지원(클럽당) : 60,000천원 × 3년=180,000천원